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(전화 044-201-7385, 팩스 044-201-739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환경부공고제2020-647호

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
환경부장관

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개정된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’20.3.24. 시행)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, 신고자의 목록 공지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
- [별표] 연번 “61”, “129”, “207”, “275”, “287”, “333”, “506”, “535”, “536”, “640”, “668”, “675”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른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, 연번 “742”부터 “751”까지를 신설

연번	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	고유번호 (CAS No.)	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	승인유예기간
61	Benzaldehyde	100-52-7	4-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	2029.12.31.
129	2-Aminoethanol	141-43-5	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	2027.12.31.
207	Ammonia, aqueous solution	1336-21-6	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	2027.12.31.
275	Calcium	7440-70-2	1-나. 살조제	2022.12.31.
287	Potassium iodide	7681-11-0	1-가. 살균제	2022.12.31.
333	3,7-Dimethylocta-1,6-dien-3-ol; 2-(4-Methylcyclohex-3-en-1-yl)propan-2-ol; 1-Methyl-4-propan-2-ylbenzene; 4-Methyl-1-propan-2-ylbicyclo[3.1.0]hexan-4-ol; 5-Methyl-2-propan-2-ylphenol; Thyme oils	8007-46-3	1-가. 살균제	2022.12.31.
506	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	52304-36-6	2-다. 살충제	2022.12.31.
535	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light	64742-47-8	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	2027.12.31.
536	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	64742-55-8	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	2027.12.31.
640	1-(6-chloropyridin-3-ylmethyl)-N-nitroimidazolidin-2-ylideneamine; Imidacloprid	138261-41-3	3-라. 목재용 보존제	2024.12.31.
668	Silver phosphate glass	308069-39-8	1-나. 살조제	2022.12.31.
			2-가. 살서제	2022.12.31.
			2-나.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	2024.12.31.
			2-다. 살충제	2022.12.31.
			2-라.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	2024.12.31.
			2-마. 기피제	2022.12.31.

675	Oil of lemon eucalyptus	1245629-80-4	2-마. 기피제	2022.12.31.
742	Performic acid generated from formic acid and hydrogen peroxide	107-32-4	1-가. 살균제	2029.12.31.
743	Platinum	7440-06-4	1-가. 살균제	2022.12.31.
744	Tin	7440-31-5	1-가. 살균제	2022.12.31.
745	Copper iodide	7681-65-4	1-가. 살균제	2022.12.31.
746	Aluminium ammonium bis(sulfate)	7784-25-0	2-마. 기피제	2022.12.31.
747	(1R,5R)-2,6,6-Trimethylbicyclo[3.1.1]hept-2-ene; (+)- α -Pinene	7785-70-8	1-가. 살균제	2022.12.31.
748	Calcium sulfate hemihydrate	10034-76-1	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	2027.12.31.
749	2-Propen-1-aminium, N,N-dimethyl-N-(2-propen-1-yl)-, chloride(1:1), homopolymer; Poly(dimethyldiallyl-ammonium chloride)	26062-79-3	1-가. 살균제	2022.12.31.
750	Emamectin benzoate	155 569 -9 1- 8	2-다. 살충제	2022.12.31.
751	Benzene, diethenyl-,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ethenylethylbenzene, chloromethylated, trimethylamine-quatern	69011-18-3	1-가. 살균제	2022.12.31.

- [별표] 연번 “571”, “693”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

현 행		개 정 안	
연번	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	연번	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
571	Cedarwo oil texas	571	Cedarwood oil texas
693	Bacilus subtilis Natto	693	Bacillus subtilis Natto

○ 이미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(화학제품관리시스템, <https://chemp.me.go.kr>)에 게시하는 신고자의 목록에 반영하여 공지(안 제2조제3항)

○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물질승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2조제4항)

3. 의견 제출

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제품관리과, 전화 044-201-6828, 팩스 044-201-6786, 전자우편 upsi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●환경부공고제2020-648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
환경부장관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, 취급시설 정기·수시검사 면제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7182호, 2020. 3. 31. 공포, 2020. 10. 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

- 전자우편 : whitekies1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6830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를 참조하시거나, 환경부 화학안전과(전화 044-201-6840, 팩스 044-201-683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환경부공고제2020-649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
환경부장관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